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4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문진석・박정현・윤종군

복기왕 • 이정문 • 이재관

윤호중 · 장종태 · 박성준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 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
행 허가) ① ~ ⑦ (생 략)	행 허가) ① ~ ⑦ (현행과 같
	<u>o</u>)
<u><신 설></u>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⑧</u>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